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1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 나경원 · 이만희 · 성일종

조경태 · 이종욱 · 우재준

송언석 • 박준태 • 최수진

백종헌 • 이헌승 • 서천호

강선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음.

이중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날로 온 국민이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국경일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1 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되었음.

이로 인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

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법률 제 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1절"을 "3·1절, 제헌절"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제2조(공휴일)		
호와 같다.	·.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1		
따른 국경일 중 <u>3·1절</u> , 광복	<u>3·1절, 제헌</u>		
절, 개천절 및 한글날	<u>절</u>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제3조(대체공휴일) ①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			
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			
우에는 <u>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u>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		
<u>운영할 수 있다</u> .	<u>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